

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김기덕 의원)

2024. 9.

기후환경본부

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030호,

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예방 및

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타 지자체 및 기관 등과의

협력체계가 절실하지만 현 조례에는 조항 근거가 없는

실정입니다.

이에,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
새로운 환경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

협력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하고

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의 대기질 관리 및 개선 노력을

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

개정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